

# 설계변경 심의 의견서

공사명	중랑교 보수보강공사
일시	2014년 6월 10일(화) 16:00~17:30

■ 심의내용 : 서울시 교통처리 심의결과대로 시행한 주말작업에 대한 휴일할증 반영 여부

## 1) 설계변경 사유 검토

- 서울시 교통처리 심의결과에 의거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해석됨.  
⇒ 교통량 조사·분석 결과에 따라 공사시간대 변경 : 주간야간작업 → 주말 야간, 주간 작업

## 2) 휴일할증 반영 여부 검토

### ○ 계약예규 검토

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)에 의거하여
- 가)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·야간작업을 할 수 없고,
- 계약상대자는 “가)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·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 다만,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·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3) 검토의견

- ### ○ 서울시 교통처리 심의결과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,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 전 휴일할증 반영에 대한 서면요청이 없었다면 휴일할증 대가가 없이 공사추진하는 것에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휴일할증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심의위원회	심의 위원장 : 공사감독1처장	홍의선
	심의위원 : 공사감독2처	이진용
	심의위원 : 공사감독2처	이민섭
	간사 : 공사감독1처	박규욱